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19가단53173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변론 종결 2021. 2. 5

판결 선고 2021. 3.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9. 8. 23. 체결된상속 재산 분할
협이는 87,260,038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87,260,0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받은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C를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8. 'C는 원고에게 19, 844, 353원 및 그중 3,621,808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 12, 114,018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54881),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받은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C를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20. 'C는 원고에게 9,701,386원 및 그 중 4,038,235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8737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F은 2012. 4. 18. C에게 20,6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대출이자율 연 29.4%,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C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2020. 6.26. 기준 위 채권의 원금 잔액은 6,869,849원이다.

라. I 주식회사는 2013. 4. 25. C에게 3,775,317원을 대출만기일 2015. 4. 25. 대출이 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8.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은 H 주식회사(변경전 J 유한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C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2020. 6. 26. 기준 위 채권의 원금 잔액은 3,696,778원이다.

마. 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6.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와 C가 있다.

바. 피고와 C는 2019.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3, 5, 6, 7, 9내지 12, 15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C가 K이 사망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60,000,000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존재한 보증금반환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C의 지분 상당액255, 000, 000원과 원고의 2020 . 6. 26. 기준 피보전채권액 합계 87, 260, 038원 중 적은금액인 87,260,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서 87,260,038원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K은 2016. 4. 8. 자필유언장의 작성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므로,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C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미 K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K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점,C가 K의 사망 전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K은 사망 전인 2016.4. 8. 자필로 '나 K은 다음과 같이 상속에 대한 다음의 유언을 남긴다.

장녀 B에게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아파트 N호(이 사건 부동산)를 증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작성연월일과 유언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드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유언장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지현

별지